

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따라,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23일
인사혁신처장

1. 응시자격요건

가. 공통 응시자격요건 [최종시험 예정일(2021. 11. 26. 예정) 기준]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, 「외무공무원법」 제9조의 결격사유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, 「외무공무원법」 제27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

【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】

- 피성년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9.4.16.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9.4.17. 이후 발생한 행위에 적용)
- 미성년자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(2019.4.17.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【「외무공무원법」 제9조제2항(임용자격 및 결격사유)】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

【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(정년)】
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

【「외무공무원법」 제27조(정년)】

-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
-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.

○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
※ 복수국적자(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)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발단위 (붙임1.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참조)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
○ 20세 이상(2001. 12. 31. 이전 출생자)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

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(2021. 11. 26. 예정)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

나.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

【 공 통 】

- 응시자격요건(경력, 학위, 자격증)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,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**경력, 학위,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**해야 하며,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
 - ※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수정 불가
-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,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(2021. 11. 26. 예정) 기준으로 판단함
- 직렬(류)별 선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

【 경력의 범위 】

- '경력'은 법인(외국법인 포함), 민간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함)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,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
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, 임기제(계약직) 공무원 경력은 포함
 - ※ 군법무관·군의관·수의장교 의무복무기간(단기)은 임기제 공무원에 준해 인정
 - ※ 서류전형 시 민·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
 -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(행정조교 등)은 제외하되, 국·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
 -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, 수의사, 약사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공인노무사, 세무사 등 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(자격증 요건에 한함)
- '관리자경력'은 법인(외국법인 포함), 민간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함),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력을 의미함

< 부서단위 책임자 >

- ① **(조직체계)** 정식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이어야 함(팀장, 부장, 책임연구원 등)
 - i) 조직도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서는 불인정(임시조직·TF팀 등)
 - ii)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정규직으로 구성될 것(위탁업체 직원, 인턴, 임시직 제외)
- ② **(업무권한)** 부서장으로서 인사권(직원평가 및 업무조정 등)과 예산집행권 등 전결권을 행사하여야 함
- ③ **(근무형태)** 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 상근하여야 함
- ④ **(증빙의무)** ①~③의 요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

※ **경력조회과정에서 위 사항(관리자 직명, 관리직무 내용,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등)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**

【 학위·자격증의 범위 】

- '학위' 요건의 '관련전공'은 **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**를 기준으로 함
- '자격증'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'국내 자격증'을 말함
- 최종시험 예정일(2021. 11. 26. 예정)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
-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
 - ※ '학위' 및 '자격증'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, 소지 후 경력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 위의 [경력의 범위]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

【 기 타 】

- '경력'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, 「공무원임용령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(2021. 4. 23.)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 - ※ 2018. 4. 22. 부터 2021. 4. 22. 까지 위의 [경력의 범위]에 해당하는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
 - ※ '학위' 및 '자격증'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
-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,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,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등은 서류전형등록 마감일(2021. 8. 20. 예정)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
-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9. 8. 21.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서류전형등록 마감일(2021. 8. 20. 예정)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에 한하여 인정됨
 - 다만,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TOEIC, TOEFL, TEPS, G-TELP, SNULT, 신HSK, JPT)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니,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최종시험예정일(2021. 11. 26. 예정) 전에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

- ※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불인정
- ※ 사전등록 방법 : 본 공고문 7페이지 “영어·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” 참고
-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TOEFL(응시 가능한 모든 국가의 성적)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의 경우만 인정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-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(우대요건 포함)과 무관한 자격증, 어학성적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(예 : 운전면허, 국어, 한자, 워드프로세서 등)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
- ※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은 [붙임1] 참조

2. 시험방법

가. 필기시험(PSAT, 공직적격성평가)

-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력·사고력 등을 선택형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합니다.
 - 과목 : 언어논리영역 / 자료해석영역 / 상황판단영역
 - 문항 및 시간 : 과목별 25문항 / 각 60분
-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 -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, 합격선은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.
 - 응시요건(경력·학위·자격증)을 두가지 이상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특정 응시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, 선발단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%를 곱한 인원수와 해당 응시요건 합격자 수의 차이만큼 당초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할 수 있습니다.

나. 서류전형

-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합니다.
- 단,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
< 서류전형 기준 >

- ①공무원 적합성(지원동기, 직무수행계획) ②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
- ③직무역량 및 성과 ④우대요건(보유여부 판단)

- 공통 우대요건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
 - ※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/100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(1·2·3급 간 가산점수 차등은 없음)
 - ※ 2017. 1. 1.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(2021. 8. 20. 예정)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
-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으로 기재된 선발단위에 한하여 우대됩니다.

다.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(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)

< 면접시험 평정기준 >

-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- ④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< 불합격 기준 >

-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(미흡)'로 평정
- ②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(미흡)'로 평정

< 평정성적 순위 >

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, '중', '하'의 개수와 관계없이 '상'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, '상'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사람에게 선순위 부여

※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

3. 시험일정

구 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필기시험	2021. 6. 30.(수)	2021. 7. 10.(토)	2021. 8. 13.(금)
서류전형	-	-	2021. 10. 22.(금)
면접시험	2021. 11. 12.(금)	2021. 11.25.(목)~26.(금)	2021. 12. 30.(목)

※ 시험일정·장소,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만 공고하며,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및 관련 시험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

4.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

가. 응시원서 접수 : 인터넷 접수만 가능

- 방 법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 접속하여 접수
※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
- 기 간 : 2021. 6. 1.(화) 09:00 ~ 6. 7.(월) 21:00 (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)
※ 취소마감일 : 2021. 6. 10.(목) 18:00

안 내 사 항

- 응시수수료(1만원) 외에 추가로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·카드결제 처리비용, 계좌이체비용)이 소요됨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
 -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함
- 응시원서는 1회(1개 선발단위, 1개 응시자격요건)만 제출할 수 있으며, 다른 선발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
- 접수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,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
- 동일 날짜에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

※ 상세한 원서접수 방법 및 장애인 등 편의제공 신청(증빙서류 제출 포함)에 대한 안내는 5.25.(화)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의 '시험안내→시험공고/공지사항' 메뉴에 공지 예정

나.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: 인터넷으로 등록

- 대상자 : 어학성적이 우대요건으로 설정된 선발단위에 응시하고, 2019. 8. 21.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(2021. 8. 20. 예정)까지 접수(등급)가 발표된 영어 (TOEIC, TOEFL, TEPS, G-TELP), 제2외국어(SNULT, 신HSK, JPT) 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 인증 받으려는 응시자
 - ※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어학성적은 서류전형 등록 시에도 등록 가능
- 방 법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 →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「영어/외국어성적 사전등록」 메뉴를 통해서 등록
- 기 간 : 2021. 5.1.~10. / 6.1.~10. / 7.1.~10. / 8.1.~10.에 등록가능
 - ※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'시험안내→시험공고/공지사항'에서 「2021년 영어·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」(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-643호/2020.12.8.) 참조

다.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: 인터넷으로 등록

- 방 법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 접속하여 등록
- 기 간 : 2021. 8. 13.(금) 09:00 ~ 8. 20.(금) 21:00 (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)
- 내 용 : 지원동기, 직무수행계획, 경력, 학위, 자격증, 어학성적 등 이력사항 등록 및 추가서류 첨부 제출
 - 서류전형 등록 시 기재·제출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.
 - '**지원동기**', '**직무수행계획**' 항목은 별도로 표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, **표절정도에 따라 서류전형 시 불이익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※ 서류전형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

라.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: 등기우편으로 제출

- 방 법 : 등기우편 제출(방문접수 불가)
- 기 간 : 2021. 10. 22.(금) ~ 10. 29.(금) ※ 10.29.(금) 소인분까지 유효
 - 제출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,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접수처 : (우 30102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(어진동)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(5급 민간경력채용 담당)

○ 내 용

- 경력, 학위, 자격증 및 우대요건(어학성적 등)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,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·변조 시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, 형사 처분 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신청기간을 통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.(최종합격자의 서류는 시험실시 기관에서 보관)

※ 증빙서류 제출 관련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

5. 유의사항

- 가. 응시자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- 나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4조, 제45조의2 및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,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다.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www.mpm.go.kr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

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나. 보수는 일반직공무원(사무관, 전문경력관)의 경우 「공무원보수규정」 [별표16], 연구직공무원(연구관)의 경우 동 규정 [별표17]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.

< 호봉 책정 관련 안내 >

-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,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
-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
 - “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”에서 인정되는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 ‘유사경력’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,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다. 최종 합격자는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5조 제6항 및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,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, 다른 기관으로는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할 수 있습니다.

라. 선발단위 중 “직렬(류)”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에서 임용예정직렬(류)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.

마. 최종합격자는 2022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(과천 또는 진천)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바. 2021년부터 지역외교·외교전문 분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경력 경쟁채용시험(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)으로 전환됩니다.

- '21년도 각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은 전년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, '22년 이후에는 분야별 인력운영 상황 등에 따라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. 필기시험 점수를 사전공개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('21.6.30. 예정)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.

아.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의 편의 강화를 위해 기출문제(최근 3년) 모의고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서 교시별 시험응시 후 답안을 제출하면 과목별 점수와 문항별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※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의 '시험문제/정답-모의고사'에서 시험응시 클릭

자.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.

차.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, 공무원임용령, 공무원 임용시험령,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.

<문의처>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) 201 - 8245, 8376, 8374

7. 선발단위별(직류/직무분야) 선발예정인원 : 70명

※ 응시요건, 담당예정업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확인

《직렬(류)별》

임용예정분야	임용예정직급(직류)	임용예정기관	인원	응시코드
고용노동	행정사무관(고용노동)	고용노동부	1	501
일반행정	행정사무관(일반행정)	인사혁신처	1	502
법무행정	행정사무관(법무행정)	법제처	1	503
외교통상	외교통상 5등급	외교부	1	504
일반토목	시설사무관(일반토목)	환경부	1	505
폐기물	환경사무관(폐기물)	환경부	1	506

《직무분야별》

임용예정분야	임용예정직급(직류)	임용예정기관	인원	응시코드
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	행정사무관(일반행정)	여성가족부	1	507
중소기업 R&D 지원정책	행정사무관(일반행정)	중소벤처기업부	1	508
철도정책	행정사무관(회계)	국토교통부	1	509
공정거래 사건 및 정책(시장감시)	행정사무관(법무행정)	공정거래위원회	1	510
공정거래 사건 및 정책(일반)	행정사무관(재경)	공정거래위원회	1	511
우체국보험 상품개발	행정사무관(일반행정)	과학기술정보통신부	1	512
금융	행정사무관(재경)	국토교통부	1	513
법무정책	행정사무관(법무행정)	법무부	1	514
보건복지분야 법제 및 송무	행정사무관(법무행정)	보건복지부	3	515
감사	행정사무관(법무행정)	산업통상자원부	1	516
시험·인증분야 법제 및 송무	행정사무관(법무행정)	산업통상자원부	1	517
신재생에너지 분야 법제 및 송무	행정사무관(법무행정)	산업통상자원부	1	518
전력시장 감시·감독	행정사무관(법무행정)	산업통상자원부	1	519
법제 및 송무	행정사무관(법무행정)	새만금개발청	1	520
관세분야 법무	행정사무관(재경)	관세청	1	521
국세분야 쟁송 및 법무	행정사무관(재경)	국세청	2	522
국세분야 쟁송 및 조사사전지원	행정사무관(재경)	국세청	1	523

임용예정분야	임용예정직급(직류)	임용예정기관	인원	응시코드
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안전관리	농업사무관(생명유전)	과학기술정보통신부	1	524
보건의료정책	보건사무관(보건)	보건복지부	5	525
의료기기 안전관리	의료기술사무관(의료기술)	식품의약품안전처	1	526
의료정책감사	의무사무관(일반의무)	감사원	1	527
의무	의무사무관(일반의무)	법무부	8	528
의료 및 생명유전 분야 특허심사	의무사무관(일반의무)	특허청	1	529
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연구	전문경력관 가군	소방청	1	530
친환경에너지 사업추진	공업사무관(전기)	새만금개발청	1	531
그린수소정책	공업사무관(화공)	산업통상자원부	1	532
수소산업육성 및 안전관리	공업사무관(화공)	새만금개발청	1	533
지역외교(러시아·CIS)	외교통상 5등급	외교부	1	534
지역외교(아프리카)	외교통상 5등급	외교부	1	535
지역외교(중남미)	외교통상 5등급	외교부	1	536
지역외교(중동)	외교통상 5등급	외교부	1	537
국제통상·협상	행정사무관(고용노동)	고용노동부	1	538
기술표준분야 국제통상·협력	행정사무관(국제통상)	산업통상자원부	1	539
다자통상	행정사무관(국제통상)	산업통상자원부	1	540
전기분야 기술표준정책	공업사무관(전기)	산업통상자원부	1	541
시스템반도체 분야 특허심사	공업사무관(전자)	특허청	1	542
자율주행 분야 특허심사	공업사무관(일반기계)	특허청	1	543
국방 빅데이터 분석	전산사무관(데이터)	국방부	1	544
국가공간 정보시스템 관리	전산사무관(전산개발)	국토교통부	1	545
정보화전략계획 수립	전산사무관(전산개발)	행정안전부	1	546
정보보안 및 정보보호	전산사무관(정보보호)	질병관리청	1	547
도시계획정책	시설사무관(도시계획)	국토교통부	2	548
국가통계 연구	통계사무관(통계)	통계청	1	549
통계분석 및 관리_고용노동부	통계사무관(통계)	고용노동부	2	550
통계분석 및 관리_여성가족부	통계사무관(통계)	여성가족부	1	551
화학물질 등록·평가	전문경력관 가군	환경부	1	552
국방분야 환경정책	환경사무관(일반환경)	국방부	1	553
살생물체 승인평가	환경연구관(환경)	환경부	1	554